

수원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단57625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현우

피고B

변론 종결 2023. 5. 18.

판결 선고 2023. 7. 6.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5.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393,261,7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3,261,7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업무협약 체결과 투자금의 지급

원고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16. 12. 초경 7MW급의 폐기물연료화(재생유) 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상호협력 하에 추진하기로 하면서, 먼저 원고가 사업시행법인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6억 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6. 12. 8. 위 합의에 따라 6억 원을 E에 지급하였다.

원고와 D는 2017. 2. 22.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에 따르면, 원고가 사업시행법인인 E에 6억 원을 우선 투자하되, D는 2017. 4. 30. 이전에 원고의 E에 대한 지분 전량을 인수하기로 한다고 정해져 있다.

나. 투자금반환약정의 체결

D는 2017. 4. 30. 이전에 원고의 E에 대한 지분 전량을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업무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 D 및 C은 2017. 11. 8. 투자금반환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금반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D는 원고에게 2018. 6. 30.까지 6억 원을 반환하고, C은 D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약정에 기한 D의 원고에 대한 일체의 투자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소제기 및 조정성립

D는 이 사건 투자금반환약정에서 정한 2018. 6. 30.까지 원고에게 위 약정에 기한 투자금 6억 원의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후 D는 원고에게 2018. 11. 30. 10,000,000원, 2013. 12. 31.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2. 3.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합71298호로 C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어 2022. 11. 1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1. C은 원고에게 580,000,000원을 2022. 11. 15.까지 지급한다.

만일 C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C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약정

(1) C과 피고는 2021. 1. 5.경 협의의혼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산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쌍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①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처 피고 소유로 하고, ② 청주시 청원구 F 공장용지 3780평방미터의 소유는 부 C 소유로 한다.

2. 기타 이혼에 따른 국민연금, 분할연금 및 재산, 기타 보험, 저축금 등은 각자 소유 명의로 하고 서로 일체 간섭하지 아니하며, 위자료는 현재 및 장래 일체 청구하지 아니한다.

(2) C은 2021.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과 피고는 2021. 1. 5.경 협의의혼을 하면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체결하였는데, C은 그 이전인 2017. 11. 8. 이 사건 투자금반환약정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함으로써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이미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반환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부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또한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도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 등 참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등 참조), 이는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2) C의 채무초과 (가) 적극재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C의 적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부동산	830,000,000
F 토지, 건물	915,444,480

이 사건 부동산	830,000,000
안동시 G 전 2155m ² 중 165/2155 지분	6,600,000
합계	1,752,044,480

(나) 소극재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C의 소극재산으로는 ①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무 580,000,000원, ② I 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무 550,000,000원, ③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반환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채무 580,000,000원, ④ J은행, J카드, K카드, L은행에 대한 대여금 및 보증채무 2,843,566,000원 등이 있는데, 위 각 채무만으로도 그 합계액이 4,553,566,000원에 달하여 C의 적극재산 합계액 1,752,044,480원을 초과함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내역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C	적극재산	이 사건 부동산	830,000,000
F 토지, 건물	915,444,480		
안동시 G 전 2155m ² 중 165/2155 지분	6,600,000		
국민연금	351,432,000		
소극재산	H에 대한 대여금 채무	580,000,000	
I 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무	550,000,000		
C의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	973,476,480		
피고	적극재산	용인시 수지구 M아파트 N호의 보증금	100,000,000
소극재산	-	-	
피고의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	100,000,000		

(4) 재산분할의 상당성에 대한 판단 (가) C과 피고는 1982. 8. 31. 혼인하여 약 39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2021. 1. 5.경 협의이혼에 이르렀고, 이혼 후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기로 한 점, 위 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가사노동, 시부모 부양, 자녀들의 양육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일정 기간 카페 및 식당을 운영하며 경제활동에도 참여한 점, 재산분할의 비율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 당사자의 직업, 경력, 경제력, 소득, 혼인파탄의 경위 등뿐만 아니라 후견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에 대한 배려, 분할 대상 재산에 명시적으로 포함할 수 없는 유·무형의 재산이 있는지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C와의 혼인생활로 이룩한 공동재산 중 1/2 상당을 분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는 C과의 공동재산 합계 1,073,476,480원(C의 순재산 973,476,480원 + 피고의 순재산 100,0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536,738,240원($= 1,073,476,480원 \times 1/2$)을 분할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536,738,24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과다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순가액 830,000,000원 및 피고의 순재산액 100,000,000원의 합계 930,000,000원에서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 산정액 536,738,240원을 공제해 보면 393,261,760원($= 930,000,000원 - 536,738,240원$)이 초과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중 393,261,760원 부분은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과다한 재산분할로서 C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다. 사해의사

C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의 2배를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도, 자신의 적극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비록 F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915,444,480원에 해당하나 위 부동산에 설정된 A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80,000,000원을 공제하면, 335,444,480원밖에 남지 않는다)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그렇다면 C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중 536,738,240원 부분은 상당한 재산분할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순가액이 830,000,000원인 사실 및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통하여 적정한 재산분할 액수보다 393,261,760원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5. 18. 기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705,272,371원(= 2018. 12. 31. 기준 원리금 잔액 598,147,925원 + 위 돈 대한 2019. 1. 1.부터 2023. 5. 18.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57,124,446원)에 해당한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반환의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피고의 이익액 중 가장 적은 액수를 한도로 하여야 하는데, 그중 피고의 이익액이 가장 적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393,261,7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93,261,7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백대현

별지